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로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원주시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 1]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사회복지시설

시/군	시설명	후원금전용계좌 사용여부	비 고
원주시	○○○○○○복지관	미사용	- 기관명의로 아닌 김효중(관장) 명의 통장 사용(감사사전조사일 2016.8.29. 현재)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강원도 “여성긴급전화1366 〇〇〇〇”에서는 2014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표 2]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 현황

시/군	시설명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제출여부
강원도 본청	여성긴급전화1366 〇〇〇〇	미보고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 원주시장은

후원금 전용계좌 미사용 등 법령 위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